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5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이기헌・박지원・정일영

윤건영 · 오세희 · 박수현

박 정 • 민형배 • 이병진
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복지전담공무원, 어린이집 원장, 의료인, 학교의 장,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7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및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	
절차) ① (생 략)	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			
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			
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			
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			
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			
야 한다.			
1. ~ 26. (생 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27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및</u>		
	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		
	원의 장과 그 종사자		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		